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80호 2024. 3. 21.(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2030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사천시 조례 제203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사천시 조례 제2032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 사천시 조례 제2033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사천시 조례 제2034호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40
○ 사천시 조례 제2035호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46
○ 사천시 조례 제2036호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51
○ 사천시 조례 제2037호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53
○ 사천시 조례 제2038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56
○ 사천시 조례 제2039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60
○ 사천시 조례 제2040호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71
○ 사천시 조례 제2041호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 사천시 조례 제2042호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78
○ 사천시 조례 제2043호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5
○ 사천시 조례 제2044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 90
○ 사천시 조례 제2045호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92
○ 사천시 조례 제2046호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98
○ 사천시 조례 제2047호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102
○ 사천시 조례 제2048호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107
○ 사천시 조례 제2049호	사천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111
○ 사천시 조례 제2050호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6

○ 사천시 조례 제2051호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	118
○ 사천시 조례 제2052호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1
○ 사천시 조례 제2053호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6
○ 사천시 조례 제2054호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128
○ 사천시 조례 제2055호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7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839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49
○ 사천시의회 규칙 제52호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 ---	153
○ 사천시의회 규칙 제53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	155

예 규

○ 사천시 예규 제5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	157
--------------	--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4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사항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	183
--------------------	---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420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남부 소로2-44호선)]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	184
○ 사천시 공고 제2024-421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남부 소로2-267호선)]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	185
○ 사천시 공고 제2024-444호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86
○ 사천시 공고 제2024-446호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8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30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입축하금”이란 전입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입축하금 지원: 별지 제13호서식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9조 중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의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란 다음에 전입축하금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입축하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20만원 지원(생애 1회)- 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사천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¹⁾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받는 기관: 사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및 중복지원 관리
-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입축하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입축하금 통합 수령 동의²⁾

- 본인의 전입축하금을 앞쪽의 통합신청인이 통합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

통합신청인과의관계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¹⁾	통합 신청인에게 통합지원 동의 ²⁾	자필서명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읍면동 확인사항(✓)	
					타시·군·구 2년 거주	권한있는자 서명 확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사천시장 귀하

작성방법

- ◎ 동의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 ◎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고, 기타 의사무능력자는 이에 준한 자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 ◎ 성명과 서명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서명은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이 정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 ◎ 읍·면·동 확인사항(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대상자 모두 타 시·군·구 2년 이상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친권자, 법정대리인 등)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4. 3. 21.>

전입축하금 지원 명부

연번	전입신고일 (전 거주지)	지원대상자					지급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주소	지급일	수령인	관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생략)</p> <p>②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산후조리비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18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3.4.27.></p> <p>1. ~ 4. (생략)</p> <p><u><신설></u></p> <p>③·④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전입축하금”이란 전입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u></p> <p>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전입축하금 지원: 별지 제13호서식</u></p> <p>③·④ (현행과 같음)</p>

제9조(대장 비치) 인구증가시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읍·면·동장은 별지 제4
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을,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별
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
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비치) -----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별
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31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2조(「사천시 무형문화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명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통무형문화재를”을 “전통무형유산을”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이란 국가지정중요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제8호”를 “무형유산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관련”을 “무형유산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를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의”로 하고, 명칭란 중 “사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사천 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중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3조(「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의 개정)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2조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문화재관련”을 “국가유산 관련”으로 한다.

제5조(「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3 문화재청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문화재청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사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 문화유산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9조(「사천시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천시 공
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및 국가
유산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제10조(「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제9호의 개정규정 중 라목은 2024
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제10조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p> <p>12.·13. (생략)</p>	<p>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p> <p>12.·13. (현행과 같음)</p>

제2조 「사천시 무형문화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u>전통무형문화재</u>를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사천시 <u>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u>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 - <u>전통무형유산을</u> ----- ----- <u>무형유산</u> <u>전수교육관</u>----- -----</p>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하“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전수교육관, 전수동, 대강당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 진주·삼천포농악, 제73호 가산오광대와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고법, 제9호 판소리수궁가, 제28호 사천마도갈방아소리를 말한다.

3. “보유자”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정의) -----

-----.

1. ----- 무형유산전수교육관----

-----.

2. “무형유산”이란 국가지정중요무형유산 -----

----- 무형유산 제8

호 -----

-----.

3.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무형

유산의 -----

-----.

4. -----

무형유산-----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문화재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업무
2. (생략)
3. 지역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전수활동
4. (생략)

【별표 1】 <개정 2020.3.24.>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소재지	비고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326	관소리 고법 판소리 수궁가
사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467	진주삼천포 농악 가산오광대

【별표 2】 <개정 2020.3.24.>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강당, 연습실 등 부대시설 (숙소 제외)	오전	20,000	냉난방 등 포함
	오후	30,000	
	야간	40,000	
강당 등 숙소 포함	1일	70,000	등 포함
	1박(1실당)	·숙소 1~4호 : 100,000 ·숙소 5호 : 120,0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1박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6.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

-----.

제4조(기능) -----
-----.

1. 무형유산 관련 -----
2. (현행과 같음)
3. --- 무형유산-----
4.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정 . . .>

무형유산전수교육관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소재지	비고
마도갈방아소리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326	관소리 고법 판소리 수궁가
사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사천시 용현면 선진길 467	진주삼천포 농악 가산오광대

【별표 2】 <개정 . . .>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강당, 연습실 등 부대시설 (숙소 제외)	오전	20,000	냉난방 등 포함
	오후	30,000	
	야간	40,000	
강당 등 숙소 포함	1일	70,000	등 포함
	1박(1실당)	·숙소 1~4호 : 100,000 ·숙소 5호 : 120,000	

※ 사용시간의 정의 등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 : 09:00부터 22:00까지
5. 1박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6.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

용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3.24.>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	주소 (소재지)		전화 번호	
	법인명칭 (단체)		설립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위탁기간				
위탁대상시설				
위탁목적				
<p>「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 전수교육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인)</p>				
사천시장 귀하				
<p>(구비서류)</p> <p>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개인인 경우)</p>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3.24.>

○○○운영의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 제13조 (생략)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3.24.>

한 것으로 보며, 준비를 위한 사용시간도 이에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 .>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	주소 (소재지)		전화 번호	
	법인명칭 (단체)		설립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 / 여)
위탁기간				
위탁대상시설				
위탁목적				
<p>「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 전수교육관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신청인 (인)</p>				
사천시장 귀하				
<p>(구비서류)</p> <p>① 사업계획서 1부 ②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법인인 경우)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개인인 경우)</p>				

【별지 제2호서식】 <개정 . . .>

○○○운영의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 제13조 (현행과 같음)

【별지 제3호서식】 <개정 . . .>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 설 명			
사 용 일 시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남: 명, 여: 명)		
비 고	※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3.24.>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 설 명			
사 용 일 시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남: 명, 여: 명)		
비 고	※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 . . >

사용허가서

(앞면)

허가 번호 : 제 호			
허 가 내 용	사용자	성 명 (단체 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사용 인원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자 설치 시 설물			
사 용 료	금액		
	산출 내역		
<p>「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 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뒷면 허가 조건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사 천 시 장</p>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3.24.>

사용허가서

(앞면)

허가 번호 : 제 호			
허 가 내 용	사용자	성 명 (단체 명)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사용 인원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자 설치 시 설물			
사 용 료	금액		
	산출 내역		
<p>「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8 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뒷면 허가 조건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사 천 시 장</p>			

【별지 제5호서식】 <개정 . . . >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면제사유			
비 고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남 / 여)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면제사유			
비 고			

「사천시 무형유산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제3조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문화시설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문화재 시설과 고려현종대왕축제 등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국가유산</u> ----- -----.</p>

제4조 「사천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6. <u>문화재관련</u> 전통민속사업</p> <p>7. (생 략)</p>	<p>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국가유산</u> 관련 -----</p> <p>7. (현행과 같음)</p>

제5조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천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p> <p>1. ~ 4. (생략)</p> <p>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 표시</p> <p>6. (생략)</p>	<p>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u>국가유산</u> -----</p> <p>6. (현행과 같음)</p>

제6조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 ② (생략)</p> <p>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 화재, 붕괴, 폭발</p> <p>6. ~ 11. (생략)</p>	<p>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국가유산</u> -----</p> <p>6. ~ 11. (현행과 같음)</p>

[별표 3] <개정 2022.6.30.>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재청	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별표 3] <개정>

재난유형 및 사고수습 주관부서 (제7조 및 제9조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재청	1.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제7조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별표 2] <개정 2021. 9. 23.>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난관리 주관기관</th> <th>재난 및 사고의 유형</th> <th>주관부서</th> </tr> </thead> <tbody> <tr> <td>문화재청</td> <td>41. 문화재 시설 사고</td> <td>문화체육과</td> </tr> </tbody> </table>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재청	4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p>[별표 2] <개정>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난관리 주관기관</th> <th>재난 및 사고의 유형</th> <th>주관부서</th> </tr> </thead> <tbody> <tr> <td>문화재청</td> <td>41. 국가유산 시설 사고</td> <td>문화체육과</td> </tr> </tbody> </table>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재청	41.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재청	4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문화재청	41.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제8조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현행	개정안
<p>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과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8. (생략)</p> <p>9.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생략)</p> <p>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p>	<p>제4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p>

<p><u>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u></p> <p>다. (생략)</p> <p><u><신설></u></p> <p>10. (생략)</p>	<p><u>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u></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u>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p> <p>10. (현행과 같음)</p>
---	--

제9조 「사천시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u>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u></p> <p>2. ~ 15. (생략)</p>	<p>제5조(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보호구역과 「<u>자연환경보전법</u>」에 따른 자연생태계보전지역</p> <p>2. ~ 15. (현행과 같음)</p>

제10조(「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p> <p>2. 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p> <p>2. 3.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32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2.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으로, “공익신고자 등임”을 “공익신고자등임”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을 “공익신고자등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신고자 등에”을 “공익신고자등에”으로, “공익신고자 등에게”를 “공익신고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신고자 등임”을 “공익신고자등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로 한다.

제7조 중 “공익신고 등을 하여 시”를 “공익신고등을 하여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익신고자 등”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업무”를 “보호업무 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익신고자 등”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p> <p>2.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p> <p>3.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p>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 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5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 공익신고자등-----
----- 공
익신고자등의 -----
-----.

② ----- 공익신고자등에 ---- --

----- 공익신고자등
에게 -----

-----.

③ -----

----- 공익신고자등-----

-----.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 등을 하여 시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
3. ~ 7.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

-----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 공익신고등을 하여 공공기관--

-----.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

-----.

1. (현행과 같음)
2. 공익신고자등-----

3. ~ 7.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
-----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 보호업무 담당 -----
-----.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생 략)

제14조(환경조성사업) ① 시장은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2. (생 략)

3. 공익신고자 등 보호제도 홍보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환경조성사업) -----

-----.

1. 2. (현행과 같음)

3. 공익신고자등 -----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33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3. 2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증 명 〉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확인	1통	300원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8)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9)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10)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통	3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300원	
(나) 토지도면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다)	건물도면	1	통	300	원		
(3)	공부 및 부분열람						
(가)	기본료	1	시간당	100	원		
(나)	초과료	10	분당	100	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	건	100	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	건	600	원		
(6)	<삭제>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	필지	400	원		
6.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	통	500	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	통	500	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	통	300	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	통	300	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	통	300	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	통	300	원		
7.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	통	300	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	통	300	원		
8. 그 밖의 제증명							
(1)	소방시설 완비증명	1	건	500	원		
(2)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	건	300	원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	건	800	원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	건	800	원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1매	500원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100원	
(6) 그 밖에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축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매	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3)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1건	500원	
(4) 잠전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1건	1,000원	
(5) 농어촌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6) 농어촌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4. 수산업 관계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2)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1건	1,000원	
(3)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	1건	1,000원	
(4)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5) 면허(양식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6) 어업권(지분)이전·변경등록	1건	1,500원	
(7)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8)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2,000원	
(9)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0)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	1건	2,500원	
(11)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	1건	1,500원	
(12)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1,500원	
5.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6. 건설 관계			
(1)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1건	허가시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3)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4) 그 밖에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 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증가) 명의 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1,000원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9)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1건	1,000원	
(10)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11)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2) 용벽 및 공작물 등 출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13)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14)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건	500원	
(15)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16)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17)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18)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19)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20)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500원	
(2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7. 보건사회 관계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 (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1건	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비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개별법령에서 정한 금액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를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p> <p>② 인증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따라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p>

<p>상에서 제외한다.</p> <p>1. ~ 6. (생략)</p> <p>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p> <p>8. ~ 11. (생략)</p> <p>②·③ (생략)</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p> <p>-----</p> <p>8. ~ 11.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34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공 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그 범위는 도로 손괴행위(도로 위 해수 방류 등)를 포함하여 그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및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
3. 손괴 사건·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4. 시에서 손괴원인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7. 국가 등에 관련 공공시설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제3조(신고 및 처리)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손괴 시간, 장소,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손괴 내용
2. 손괴원인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3.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원

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 지급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후 결정하며, 손괴원인자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7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의 범위(제2조 관련)

구분	공공시설물명	관리부서
1. 교통안전시설물	방호울타리 차량진입금지시설(블라드) 무단횡단금지시설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등	
2. 도로부속물	도로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도로반사경 등	
3. 도로표지	도로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판 교통안전표지 등	
4. 공공자전거시설	자전거보관대 자전거도로 등	
5. 버스	버스정류장(쉘터, 벤치, BIT, 노선안내도 등)	
6. 도로시설물	육교, 방음벽	
7.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 분전함	
8. 공원, 조경	가로수, 띠녹지 공원 부속시설물	
9. 생활안전시설물	CCTV 관련 시설 장비 일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해당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대장

연 번	공공시설물 손괴 내용			신고인		손괴원인자		손괴 공공시설물 처리내용				포상처리		
	신고 일자	위치	내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주소)	조치 일자	조치 내용	완료 일자	완료 내용	지급 금액	지급 일자	지급 방법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35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문화예술 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천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6조(문화예술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문화예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 교육단체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협력·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종사자, 현장 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재교육 등, 전문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천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2.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센터 운영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36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관상어 교육 등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상어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관상어 교육, 창업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사천시 관상어 교육 및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사천시 실안선창1길 2에 위치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교육실, 축양실, 실습장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1.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 관상어 산업에 관한 창업 지원
3. 그 밖에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업무의 위탁) 사천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센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37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4. 3. 21.>

서포면 주민복지센터 이용 요금표(제5조 관련)

이 용 요 금 표			
구 분	대 상	금 액 (원)	비고
일 이용자	아동 (7세 미만)	2,000	
	노인 (70세 이상)	4,000	
	대인 (7~69세)	5,000	
	1일 2회 추가요금 (전연령)	1,000	
월 이용자	아동 (7세 미만)	40,000	
	80세 이상		
	70~79세	60,000	
	대인 (7~69세)	70,000	
	가족	80,000	
	헬스	무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서포면주민복지센터(이하“주민복지센터”라 한다)란 <u>시장</u>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과 건강 체력 단련실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사천시장</u> (이하 “<u>시장</u>”이라 한다)----- ----- -----.</p> <p>2.·3.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38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를 “인가 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에서”로 한다.

제3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④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
2. 일부제한구역에서 1회에 한하여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축종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된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돼지·개·가금류 간 축종 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3. 삭 제</p> <p>4. “주거 밀집지역”이란 <u>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50m이내로서 5호 이상</u>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p> <p>5.·6. (생 략)</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② (생 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6. (생 략)</p> <p>7. <u>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축종의 변경 없이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u></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4. ----- <u>인가 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에서</u> ----- -----.</p> <p>5.·6. (현행과 같음)</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 <u>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u></p>

<신 설>

④ (생 략)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

2. 일부제한구역에서 1회에 한하여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축종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된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돼지·개·가금류 간 축종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39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8조(위탁관리 등) 시장은 사천시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1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청결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청소를 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신속하게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주기적인 도색을 할 것

제12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4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8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20조(준수사항)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21조(금지행위)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관리 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주 체	설치 년도							직급			
	관리주 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월평균 이용인원					
규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IV (설치수)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3일		
신 청 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시 설 현 황	소재지			관리주체								
	관리인			(남, 여) (전화번호:)			설치년도					
	규모		부지 : m ²		화장실 면적 : m ²							
시 설 내 역	시설내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의시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여성 위생용품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p>「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p>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h2 style="margin: 0;">유료화장실 신고필증</h2>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여성위생용품		환풍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p>「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천 시 장 (인)</p>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40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75세”를 “70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사천시에 주소를 둔 <u>75세</u>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70</u> <u>세</u> -----.</p>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41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가”를 “사천시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을”을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희망사천택시”란”을 ““희망사천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써”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3.“마을대표”란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이·통장을 말한다.

4. “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이하 “교통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희망사천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통시스템으로 운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운행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시장은 교통시스템의 운행 내역을 근거로 익월에 비용을 정산·결정하고 매월 2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사천택시 운영시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u>시가</u>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u>지역</u>을 말한다.</p> <p>2.“<u>희망사천택시</u>”란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p> <p>3.“<u>마을대표</u>”란 「사천시 리·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리·통장을 말한다.</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 ----- ----- ----- <u>사천</u> <u>시가</u> ----- -----.</p> <p>제2조(정의) ----- -----.</p> <p>1.----- ----- <u>지역 또는 이</u> <u>용이 불편한 지역</u> -----.</p> <p>2.“<u>희망사천택시</u>”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써 -----.</p> <p>3.“<u>마을대표</u>”란 「사천시 <u>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u>」 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u>이·통장</u>을 말한다.</p> <p>4. “<u>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u>”(이하 “<u>교통시스템</u>” 이라 한다)이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3</p>

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희망사천택시 운행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시내 버스 운행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마을
2. (생략)

제5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사천택시 사업자는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희망사천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사천택시운영 시 예산 부족으로 지원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
----- 사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
2. (현행과 같음)

제5조(비용의 신청) ① -----

----- 다만, 교통시스템으로 운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운행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시장은 교통시스템의 운행 내역을 근거로 익월에 비용을 정산·결정하고 매월 2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사천택시 운영 시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행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희망사천택시 운
행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신청서
가 접수된 월별로 지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42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4.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천시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천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택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택시 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택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3. 제12조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재정지원 사업)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의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3. 통합콜센터 구축 장비 지원 및 운영 사업

4.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6.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7.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 ① 영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만료 2개월 전(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적용례) 제15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43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공동주거 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9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조정기구)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들의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율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에서 구성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2. 제1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들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설문조사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 시장은 관리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화해조정지원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화해조정지원단은 법률, 환경,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화해조정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
3.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화해조정지원단의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10조(지원사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지원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시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 방안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관련 시책을 사천시 누리집,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44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2미터”를 “1.5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p> <p>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u>2미터</u> 이상</p> <p>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p> <p>②·③ (생략)</p>	<p>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p> <p>-----</p> <p>-----</p> <p>-----</p> <p>-----</p> <p>-----</p> <p>-----</p> <p>-----</p> <p>2. -----</p> <p style="text-align: center;">-----<u>1.5미터</u>-----</p> <p>3. -----</p> <p>-----</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45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보호구역”이란 시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시장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거주지에서 그 시설 또는 장소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 목표 및 개선 계획
2.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3.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차량 진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7.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정지원 계획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통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4.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5.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
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와 보행안전 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 경계 표시
7.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 설치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8.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 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차량통제 등)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로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전문가, 교통봉사단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46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사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② 시민은 사천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환경·연령 등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4.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확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의 날) 시장은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 자살예방을 위한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교육 및 홍보)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교육·홍보활동으로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시도자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관·단체등의 예산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10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시장은 약물·자살 관련 유해정보 및 쉽게 자살에 이를 수 있는 수단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47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1. 정신질환자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3. 지역사회 거주 치료·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은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2.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사업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6. 재난심리지원
7.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11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의료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거나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관·단체 등의 예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2. 제7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48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사천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시장은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인의 성비 및 농어업 경영 등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사천시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

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 자금

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

4.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5.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회수에 관하여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49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 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 사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그리고 사천시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천시 퇴직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는 현행 제3조와 같이 하되, 같은 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예결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는 현행 제4조와 같이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는 “제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은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의원의 선임은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에서 출납폐쇄 후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예결위에서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정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일비의 지급 및 기준) ① 제4

이 될 수 없다.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② (현행 제3조와 같음)

③ 검사기간 중 선임된 감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예결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촉기간) ①·② (현행 제4조와 같음)

제10조(일비의 지급 및 기준) ① 제5

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1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비는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
----- 제5조제2항-----

-----.

-----.

② (현행과 같음)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50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시행일”을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사천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4.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6. 사천시의회 소관 조례 	<p>제3조(입법평가 대상)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u>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u>-----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51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6명”을 “5명”으로, 같은 조 제3호 중 “5명”을 “6명”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의회 사무국”을 “의회사무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행정관광위원회”를 “행정관광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항공위원회 안전도시국, 항공경제국”을 “건설항공위원회: 항공경
제국, 안전도시국”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단서 부분에 “있다.”를 “있으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은
겸임할 수 없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사천시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행정관광위원회 <u>6명</u></p> <p>3. 건설항공위원회 <u>5명</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의회운영위원회</p> <p>가. (생략)</p> <p>나. <u>의회사무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다. (생략)</p> <p>2. <u>행정관광위원회</u>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문화관광수산국, 평생학습센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3. <u>건설항공위원회</u> 안전도시국, 항공경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행정관광위원회 <u>5명</u></p> <p>3. 건설항공위원회 <u>6명</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의회사무국</u>----- -</p> <p>다. (현행과 같음)</p> <p>2. <u>행정관광위원회</u>: ----- ----- ----- -----</p> <p>3. <u>건설항공위원회</u>: <u>항공경제국, 안전도시국</u>, ----- -----</p>

<p>사항</p> <p>제6조(상임위원장) ①~③ (생략)</p> <p>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u>있다</u>.</p>	<p>-</p> <p>제6조(상임위원장)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있으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은</u> <u>겸임할 수 없다</u>.</p>
--	---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52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의회”를 “사천시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의회”를 “사천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정활동비 :”를 “의정활동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월정수당 :”을 “월정수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의회 의장”을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5조 중 “시”를 “사천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용을 위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천시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본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별표 1】 <개정 2024. 3. 2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	월 1,200,000원	월 300,000원

【별표 3】 <개정 2024. 3. 21.>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의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3.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3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u>시의회</u>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사천시의회</u> ----- ----- -----.</p>
<p>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u>시의회</u>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과 같다.</p> <p>1. <u>의정활동비</u> : 별표 1에 따른 금액</p> <p>2. <u>월정수당</u> : 별표 2에 따른 금액</p>	<p>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① <u>사천시의회</u> ----- ----- -----.</p> <p>1. <u>의정활동비</u>: ----- --</p> <p>2. <u>월정수당</u>: ----- -</p>
<p>제3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u>시의회</u>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p> <p>②·③ (생략)</p>	<p>제3조(여비지급) ① ----- ----- <u>사천시</u> <u>의회 의장</u>(이하 “의장”이라 한다)-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u>시</u>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p>	<p>제5조(준용) ----- ----- <u>사천시</u> ----- -----.</p>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53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인사
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인사청문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을 “인사청문은 법 제47
조의2제2항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u>제42조의2제2항에</u>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p>	<p>제5조(인사청문) ① ----- 법 <u>제47조의2제2항에</u> ----- ----- ----- -----.</p>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54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천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사천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 폐지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이하 “공동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이하 “수임자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수임자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⑦ 청구인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집행기관 및 읍·면·동별 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공보, 시 및 의회의 게시판이나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9조(보정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 또는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청구인명부에 대한 보정 절차를 진행할 시, 법 제10조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고, 보정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대표자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청구의 철회) 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13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조례안 청구 전에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와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시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조례안에 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대표자)에게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2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른 홍보·입안지원 등 사무
4.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5.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 청구에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input type="checkbox"/>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input type="checkbox"/>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 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공동대표자용 []청구 · []철회 ·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 []철회, []선정 대표자 지정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청 구 인 명 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 요 내 용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 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 성 방 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 입 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입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 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 구 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채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채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채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gap: 20px;"> 사천시의회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15px; color: red; font-weight: bold;">직인</div> </div>				

- 청구조례명 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의장 귀하

-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m²]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의장 귀하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 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 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 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의견제시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의견제시 요청내용				

위와 같이 주민조례청구 건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천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및 의견제시 요청 세부내용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청구하고자 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의견제시 요청내용”에는 요약하여 작성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2055호

제27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사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p>	<p>제2조(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 ----- ----- ----- - <u>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u></p>
<p>제3조(회기)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총 40일 이내로 한다. <u>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u></p> <p>②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p>	<p>제3조(회기) <삭 제></p> <p>②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규칙 제83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사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별표 2 문화체육과 단위업무란의 “8.문화재 보호 육성”을 “8.국가유산 보호 육성”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체육과 세부사무명란의 “1.문화재 보수계획 수립”을 “1.국가유산 보수계획 수립”으로, “2.문화재 보수 보조금 신청”을 “2.국가유산 보수 보조금 신청”으로, “3.문화재 보수 추진”을 “3.국가유산 보수 추진”으로, “4.문화재 매매업 신고”를 “4.국가유산 매매업 신고”로, “5.문화재 매매업 (휴)폐업 신고”를 “5.국가유산 매매업 (휴)폐업 신고”로 한다.

제3조(「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문화재가”를 “국가유산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3(문화관광수산국) ① (생략)</p> <p>② 문화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략)</p> <p>2. <u>문화재</u> 관리 및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p> <p>3. ~ 5. (생략)</p> <p>③ ~ ⑧ (생략)</p>	<p>제7조의3(문화관광수산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국가유산</u> -----</p> <p>-----</p> <p>3. ~ 5. (현행과 같음)</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제2조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 별표는 변경된 부분만 표기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개정 2022.12.15.> 본청 전결대상사무(제4조제1항제2호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소 관 부서별</th> <th rowspan="3">단위업무</th> <th rowspan="3">세 부 사 무 명</th> <th colspan="5">기안자 및 전결권자</th> <th rowspan="3">시 장</th> </tr> <tr> <th colspan="2">담당자</th> <th rowspan="2">담당 관 소 장</th> <th rowspan="2">국 소 장</th> <th rowspan="2">부시 장</th> </tr> <tr> <th>주무 관</th> <th>팀장</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문화 체육과</td> <td rowspan="5">8. 문화재 보호 육성</td> <td>1.문화재 보수계획 수립</td> <td>기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문화재 보수보조금 신청</td> <td>기안</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문화재 보수추진</td> <td>기안</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문화재 매매업 신고</td> <td>기안</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문화재 매매업(휴)폐업 신고</td> <td>기안</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담당자		담당 관 소 장	국 소 장	부시 장	주무 관	팀장	문화 체육과	8. 문화재 보호 육성	1.문화재 보수계획 수립	기안			○			2.문화재 보수보조금 신청	기안		○			3.문화재 보수추진	기안		○			4.문화재 매매업 신고	기안		○			5.문화재 매매업(휴)폐업 신고	기안		○			<p>[별표 2] <개정 2022.12.15.> 본청 전결대상사무(제4조제1항제2호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3">소 관 부서별</th> <th rowspan="3">단위업무</th> <th rowspan="3">세 부 사 무 명</th> <th colspan="5">기안자 및 전결권자</th> <th rowspan="3">시 장</th> </tr> <tr> <th colspan="2">담당자</th> <th rowspan="2">담당 관 소 장</th> <th rowspan="2">국 소 장</th> <th rowspan="2">부시 장</th> </tr> <tr> <th>주무 관</th> <th>팀장</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문화 체육과</td> <td rowspan="5">8. 국가유산 보호 육성</td> <td>1.국가유산 보수계획 수립</td> <td>기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국가유산 보수보조금 신청</td> <td>기안</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국가유산 보수추진</td> <td>기안</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국가유산 매매업 신고</td> <td>기안</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국가유산 매매업(휴)폐업 신고</td> <td>기안</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담당자		담당 관 소 장	국 소 장	부시 장	주무 관	팀장	문화 체육과	8. 국가유산 보호 육성	1.국가유산 보수계획 수립	기안			○			2.국가유산 보수보조금 신청	기안		○			3.국가유산 보수추진	기안		○			4.국가유산 매매업 신고	기안		○			5.국가유산 매매업(휴)폐업 신고	기안		○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담당자		담당 관 소 장		국 소 장		부시 장																																																																																							
	주무 관	팀장																																																																																																	
문화 체육과	8. 문화재 보호 육성	1.문화재 보수계획 수립	기안			○																																																																																													
		2.문화재 보수보조금 신청	기안		○																																																																																														
		3.문화재 보수추진	기안		○																																																																																														
		4.문화재 매매업 신고	기안		○																																																																																														
		5.문화재 매매업(휴)폐업 신고	기안		○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시 장																																																																																											
			담당자		담당 관 소 장	국 소 장	부시 장																																																																																												
			주무 관	팀장																																																																																															
문화 체육과	8. 국가유산 보호 육성	1.국가유산 보수계획 수립	기안			○																																																																																													
		2.국가유산 보수보조금 신청	기안		○																																																																																														
		3.국가유산 보수추진	기안		○																																																																																														
		4.국가유산 매매업 신고	기안		○																																																																																														
		5.국가유산 매매업(휴)폐업 신고	기안		○																																																																																														

제3조 「사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p>제4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u>문화재</u>가 위치한 지역의 산림 3.·4. (생략) 	<p>제4조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기준)</p> <p>-----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국</u> <u>가유산이</u> ----- 3.·4. (현행과 같음)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5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정부나 사천시장, 대한민국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또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사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사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 범위) (생략)</p> <p>1. ~ 3. (생략)</p> <p>4. <u>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u></p> <p>5.6. (생략)</p> <p>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사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2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중앙정부나 사천시장,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또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u>----- -----</p> <p>5.6. (현행과 같음)</p> <p>제7조(수당 및 여비) ----- ----- ----- 「사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 . - ----- ----- .</p>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의회 규칙 제5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1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전까지”를 “전 18시까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를 “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소속위원 에서”를 “소속 위원 중에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④ (생략)</p> <p>⑤ 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2일 전까지 의회 사무국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후보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⑥ (생략)</p> <p>제45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p> <p>②~④ (생략)</p> <p>제88조(의원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부친다.</p> <p>③~④ (생략)</p>	<p>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 ----- 전 18시까지 -----</p> <p>⑥ (현행과 같음)</p> <p>제45조(표결방법) ① ----- -----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 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 다. ----- -----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88조(의원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생략)</p> <p>② -----소속 위원 중에서-----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예규 제5호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4년 3월 21일

사천시장 박 동 식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규정”을 “지침”으로, ““공직자“이”를 ““공직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접수증을”을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의 공익신고”를 “공익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정하여 1차에 한하여”를 “정하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조사)”를 “(공익신고의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천시가”를 “시장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안내문을”을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을 “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천시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은”을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소속직원이”를 “누구든지”로,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직원”을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26조 중 “공익신고자가”를 “공익신고자등이”로, “공익신고자로”를 “공익신고자등으로”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2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을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으로 한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처분”을 “판결”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를 “공익신고자등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준용)”을 “(다른 지침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정과 다른 규정”을 “지침과 다른 지침”으로, “규정”을 “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을 “지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i>알고 있는 경우 기재</i>	
	직위	<i>알고 있는 경우 기재</i>	연락처	<i>알고 있는 경우 기재</i>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i>별첨가능</i>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input type="checkbox"/>]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또는 완료 ()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 ○ ○ ○ ○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p>1. 조사기관의 조사과정</p> <p>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기관에서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p> <p style="padding-left: 40px;">⇒ [] 동의 [] 부동의</p> <p>2. 수사기관의 수사과정</p> <p>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p> <p style="padding-left: 40px;">⇒ [] 동의 [] 부동의</p>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 ○ ○ ○ ○ 귀하

■ 사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3. 21.>

20 년 월 일 접수
20 공익 제 호

접수자	공익신고 책임관

공 익 신 고 기 록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 당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성명	

처 리	조사종료일	20 년 월 일	내 용	
	이 송 일	20 년 월 일	이송기관	
	결과통보일	20 년 월 일	대상자 (대상기관)	

신분공개 동의여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종결확인	담당	공익신고책임관
종 결 일	20 . . .				
보존기간	년 (20 . . . 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 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우리 기관에서 이송한 공익신고 사항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 공익신고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12조 제1항)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등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 종료 후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2. 공익신고 처리 시 유의사항

○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0조 제5항)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시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또는 타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범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 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p> <p>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p> <p>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삭 제></p>	<p>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천시 소속의 공직자(이하 “공직자</p>	<p>제3조(적용범위) -- <u>지킴</u>----- ----- “<u>공직자</u>”-----</p>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생략)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

-----.

제5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

-----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대표자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익신고-----

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생략)

2.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4. (생략)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생략)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생략)

② 사천시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4.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완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정하여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이 -----

-----.

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
문을 첨부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
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
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1. ~ 5. (생략)

④ (생략)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
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
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
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

⑥ 사천시는 제1항의 조사절차
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
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 안내
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

③ -----
-- 사건-----

-----.

1.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법 제9
조제6항-----

----- 법 제9조제8항

-----.

⑥ 시장은 -----

-----.

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생략)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사천시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2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략)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

-----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해서는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를 준용한다.

③ (생략)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6조(신변보호 안내)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

③

공익신고자등

제26조(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자등으로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생략)

<신설>

② 공직자가 이 지침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

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

제27조(징계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

제28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

----- 공
익신고자등-----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공익신고자 보호) -----

----- 공익신고자등-----

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6. (생략)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공익신고자등-----
-----.

1. ~ 8. (현행과 같음)

제3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공공기관-----

-----.

1. ~ 6. (현행과 같음)

7. -----
----- 판결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

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신 설>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시장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

-----.

1. 공공기관-----

----- 3년 ---

2. 공공기관-----

③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

----- 공공기관-----

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생략)
- ② (생략)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시장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 5. (생략)

제34조(준용) ① 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

-----.

- 1. ~ 3. (현행과 같음)
-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
--- 공익신고자등과 그 -----

-----.

- 1. · 2. (현행과 같음)
-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

- 4. · 5. (현행과 같음)

제3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

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 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 지

침과 다른 지침-----

----- 지침-----

-----.

② ---지침-----

----- 지침-----.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고시 제 2024-4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사항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점용·사용 변경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1.

사 천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사항

허가번호 (연월일)	목적	위치	면적(㎡)	허가기간	피 허가자		비고
					주소	성명	
2024-1 (2024.3.11.)	포락지 복구공사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 9-33, 9-34번지선	계: 992 직접: 80 간접: 912	2024. 3. 30. ~ 2025. 3. 29.	사천시 사남면 월성1길 89, 101동 1304호 (사천리가)	강호명	기간연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실시계획 승인사항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점용·사용 허가사항		공사내용 (인공구조물 설치)	공사 예정기간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수리번호 (연월일)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사천시 사남면 월성1길 89, 101동 1304호 (사천리가)	강호명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 9-33, 산 9-34번지선	1,176	포락지 부지 조성	2023. 5. ~ 2025. 3. 29.	[변경승인]2024-1 (2024.3.13.)
			계: 992 직접 80 간접 912	오탁방지막 설치 및 제거	2023. 5. ~ 2025. 3. 29.	[변경승인]2024-2 (2024.3.13.)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공고 제2024-420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남부 소로2-44호선)]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 도시관리 계획[시설:도로(남부 소로 2-44호선)]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 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4	8.0	국지 도로	2,400	9호광장	소로1-15	일반 도로	-	07.11.02 사천2007-144호	
변경	소로	2	44	8.0	국지 도로	2,300	송포동 1162-5번지	소로1-15	일반 도로	-	07.11.02 사천2007-144호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44	소로 2-44	■ 시점 및 선형, 연장 변경 - L=2,400m, B=8m → L=2,300m, B=8m	■ 시점부 변경으로 기존 도로의 활용을 통한 도로의 사용성 증가, 자연훼손 감소, 연장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소.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장 소 : 사천시청 도시과

다.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 시청 도시과(☎055-831-3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공고 제2024-421호

사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남부 소로2-267호선)]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 도시관리 계획[시설:도로(남부 소로 2-267호선)]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 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67	8.0	국지 도로	413	대로1-1	송포동 1509-22번 지	일반 도로	-	18.11.01 사천2018-200	
변경	소로	2	267	8.0	국지 도로	656	대로1-1	소로2-44	일반 도로	-	18.11.01 사천2018-200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267호선	소로 2-267호선	■ 종점 및 연장 변경 - L=413m, B=8m - L=656m, B=8m	■ 기존 도로를 활용, 주변 도로와 연 계를 통해 도로망을 정비하고 협소 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 주민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장 소 : 사천시청 도시과

다.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 시청 도시과(☎055-831-31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공고 제2024-444호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옥외행사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나. 적용범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마. 권고사항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2,
FAX : 831-6036)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사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을 하는 행사를 말한다.
2. “주최자”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7.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8.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을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② 시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비상 시 대응 요령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5.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1.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
- ⑤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 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사천소방서 및 사천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7조(긴급안전조치)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를 중단 또는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4항의 시정 요청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등

제8조(주최자 또는 주관자에 대한 권고사항) 시장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옥외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할 것

제9조(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천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사천 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공연법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절차,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관람자의 피난방법, 공연의 특수상황,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피난안내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5(피난안내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연 관람자의 규모) 법 제11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란 1천명 이상의 관람자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 공고 제2024-446호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비상설화를 위한 조문 정비(안 제8조, 제11조, 제1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65,

FAX : 831-6018)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사천시조례 제 호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을 ““다문화가족”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1. “외국인주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천시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사천시의 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사천시의 각종”을 “시의 각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사천시”를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제6조제1항 본문 중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을 “지원대상은”으로, “다문화 가족을 지원대상”을 “다문화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는 제외한다”를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사천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으로,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시청, 창원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사천출장소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 공무원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천 시 공 보

제880호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를 “협회의 회의는”으로,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를 “소집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외국인주민</u>”이란 사천시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p> <p>2. 「<u>다문화가족지원법</u>」에 근거한 “<u>다문화 가족</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p> <p>가. 「<u>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u>」 제2조제3호의 <u>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u></p> <p>나. 「<u>국적법</u>」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u>외국인주민</u>”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u>국적법</u>」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p> <p>2. “<u>다문화가족</u>”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u>다문화가족지원법</u>」 제2조제1호 ----- -----.</p> <p><삭 제></p> <p><삭 제></p>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

화허가를 받은 사람

4. (생략)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사천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사천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천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제2호 -----
-----.

<삭 제>

<삭 제>

4. (현행과 같음)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

----- 시의 재산-----
----- 시의 각종 -----.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외국인주민 -----

-----.

② 시장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생략)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생략)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결혼이민자 등이 사천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 10. (생략)

③ (생략)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

② ----- 외국인주민 -----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 다문화가족 -----

----- 사람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시에 -----

3.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다문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
장 및 담당과장, 교육청·경찰서
· 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
무소 등의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주민 및 다
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
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및 1
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서
삭제>

③ 협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시장이 위
촉한다.

1.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부
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창
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사천출
장소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
족 업무 관련 공무원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
는 사람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④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생략)

제11조(회의)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생략)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

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삭 제>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회의는 ----- 소집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삭 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
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

6. 협회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
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시책사업 추진) ① (생략)

② 시장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
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
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
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
황조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④ (생략)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
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
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

제15조(시책사업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외국인주민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 외
국인주민 -----

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 ④ (생략)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관 련 법 규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